



제417회국회(임시회)
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<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
경영 제한 폐지 >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040호)

2024. 8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경영 제한 폐지(안 제8조 제4항 삭제)	2

I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정 부
- 나. 제 출 일 : 2024. 6. 27.
- 다. 회 부 일 : 2024. 6. 2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경영 제한 폐지(안 제8조제4항 삭제)

가. 주요 내용

-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(이하 “IPTV사업자”)가 텔레비전·라디오·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경영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겸영금지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·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(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)할 수 없다.	제8조(겸영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나. 검토 의견

- 현행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 제8조제4

항¹⁾은 IPTV사업자에게 텔레비전·라디오·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(20%)를 초과하여 경영(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)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.

- 2024년 7월 기준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현황을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, 텔레비전 PP의 경우 전체 325개 중 KT 등 IPTV사업자가 13개(4.0%)를 경영하고 있고, 데이터 PP의 경우 전체 30개 중 1개(3.3%)를 경영하고 있어, 법상 제한 기준인 20%에는 못미치는 수준임.

< IPTV사업자별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현황 >

구분	텔레비전 PP			데이터 PP		
	개수	비율(%)	전체	개수	비율(%)	전체
KT	1	0.3	325 (20%는 65개임)	1	3.3	30개 (20%는 6개임)
LGU+	8	2.5		-	-	
SKB	4	1.2		-	-	
합 계	13	4.0		1	3.3	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.

-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제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, 2022년 8월 16일에 「방송법 시행령」이 개정되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은 3%에서 5% 이하로 완화되었고,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PP 경영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음.

1)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8조(겸영금지 등)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·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(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)할 수 없다.

<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 제한 현황 >

종합유선방송(SO)	위성방송	IPTV	지상파
○ TV·라디오·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/5 초과 경영 금지 폐지('22.8.16.)	○ TV·라디오·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/5 초과 경영 금지 폐지('22.8.16.)	○ TV·라디오·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/5 초과 경영 금지	○ TV·라디오·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수의 3% → 5% 이하로 완화('22.8.16.)

주: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경영 제한은 2022년 8월 16일에 「방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이미 폐지되었음.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.

-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완화의 흐름에 따라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,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동일서비스(종합유선방송사, 위성방송사)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,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과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M&A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.
- 또한, 2022년 8월 16일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PP 경영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- 참고로, IPTV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“의견 없음” 입장임.
- 종합해보면,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에

대해서는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,
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수준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
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226